#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2021. 2. 24.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김 규 식

**1. 발 의 자**: 은복실 의원, 남연희 의원

**2. 제안이유**

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인생 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함

**3. 주요내용**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등(안 제4조~제5조)

다.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10조)

라.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5조)

**4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: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3조

나. 협조부서: 어르신장애인복지과

다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

라. 입법예고(2021. 2. 9. ~ 2. 14.)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안은 베이비부머·신중년 등으로 일컫는 예비노인이자 잠재적 복지 수요자인 장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, 장년층의 은퇴 전후 인생 설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16조 시행규칙까지 총 16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○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안 제2조 1호 “장년층”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
- 안 제4조에서는 취업훈련 및 일자리, 사회공헌활동, 교육, 문화·여가 등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장년층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
- 안 제5조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
-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와 운영, 시설의 위탁 등에 대한 사항과 시설 사용료의 부과·징수, 감면, 반환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
-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해촉,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.

○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(2021~2025)을 확정하고 신중년 계속고용 지원과 기초연

금 확대 등 건강한 고령화를 목표로 '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'를 구현하여 사회적·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에 나선다고 합니다.

○ 본 조례안 제정은 이러한 시대 흐름을 볼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,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우리 구 전체 인구수 29만 3,556명 중 장년층 인구수는 6만 889명으로 23.5%를 차지하고 있으나, 청년과 노인 세대에 비해 지원정책의 수혜범위가 적은 장년층의 경우 조기퇴직과 재취업의 한계로 인해 생계 문제와 노후 불안 등으로 어려움이 있기에,

○ 장년층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므로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, 사회공헌활동, 교육, 문화·여가 등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제3의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사회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.